

「2025년 B the B 뷰티 선도기업 발굴 및 지원사업」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세부 기준

□ 서울경제진흥원 민간협력사업 집행기준에 따른 ‘사업비(민간부담금)의 구성 및 계상기준’

- “민간부담금”은 인건비만으로 구성될 수 없으며, 협약기관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현물 또는 현금을 함께 계상하여야 한다. 단,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위탁형 협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.
- “민간부담금” 중 인건비는 현물로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참여율을 반영하여 계상하며, 사업담당자는 참여하는 인력의 수준이 과대 계상되지 않도록 이를 살펴야 한다.
- “민간부담금” 중 장비, 부동산 등을 현물로 계상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담당자는 인정기준 및 계상방법 및 정산방법 등을 사전에 명시하여 안내해야 한다.
- “민간부담금” 중 별도의 계상기준이 없는 무형적 자산의 경우 시장조사를 통한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하며, 사업담당자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.
- 그 외 민간부담금의 구성 및 계상기준은 개별 민간협력사업의 목적 및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건별 사업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- ‘인건비’는 현물로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참고하여 계상한다. 단, 행정안전부 인건비 기준 단가는 참여율 50%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므로, 협약기관의 인건비는 참여인력의 참여율에 따라 1인당 월 임금의 100%이내에서 증감하여 계상할 수 있다.

〈 2025년 행정안전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〉

(아래 표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%로 산정)

등급	월 임금
책임 연구원	월 3,705,904원
연구원	월 2,841,638원
연구보조원	월 1,899,539원
보조원	월 1,424,702원

- 별도의 계상 기준이 없는 무형적 자산에 해당하는 공간 연출, 홍보마케팅 등은 협약기관별 서비스 비용을 고려하여 계상 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. 단, 계상 항목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 보고가 가능하고, 사업 운영 목적과 부합하는 비용에 한해 인정한다.
- ‘기타 운영비’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비용으로 계상한다.
- 그 외 사업비 구성 및 계상 기준은 협약 추진 목적 및 협약 대상의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협약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□ SBA 사업비 집행 가능 항목 및 사용 기준

구분	세부 항목
공간 조성 및 연출	· 팝업 공간 기획 및 연출, 시공, VMD 등 공간 조성비 일체
오프라인 프로모션	· 팝업 연계 오프라인 프로모션비 일체 - 런칭행사, 현장 체험 프로그램, 이벤트 운영 등
온라인 프로모션	· SNS 광고, 네이버 검색광고, 블로그 체험단 등 온라인 홍보·광고비
개발 및 제작비	· 기획 상품, 패키지, 굿즈 등 팝업용 상품 개발·디자인 및 제작비 일체
※ SBA 사업비 내 집행불가 항목 -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 또는 공제받는 금액 - 식대, 음료, 다과 등 복리후생비성 및 후원비성 경비 - 노트북, 카메라, 컴퓨터 등 범용성 자산 취득 비용 - 직원 급여, 고용보험 등 상시 운영 인건비 - 간이 영수증, 개인 신용카드 결제 등 인증 불가능 영수증 - 기타 간접비 및 전자(세금)계산서 발행 불가 항목 - 협약체결 이전 사용 비용 등	

□ 사업비의 지급 및 사용

- 사업비 집행의 책임은 사업비를 집행한 당사자로 하며, 공통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 각자 집행한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.
- 사업비를 지급받는 대상은 별도의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를 지급받아야 하며, 해당 통장을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- “민간지원금”을 수령하는 기관은 사업비 전용 통장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SBA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협약기관의 인건비는 사업비 통장에서 지출할 수 없으며, 협약기관의 다른 통장으로 지출한 이후 증빙을 통해 현물로 인정받아야 한다.
- “민간부담금” 중 인건비의 산정은 타 사업과 합산하여 참여율 100%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사업담당자를 이를 유효한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.
- 사업비 지출은 협약기관의 법인명의 카드 및 계좌를 통한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, 사업비 집행은 SBA와 협의된 사업 기간 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.

□ 사업비 정산 기준

- 사업비의 정산은 ‘서울경제진흥원 민간협력사업 정산 일반기준’에 따른다.
- 사업종료시 협약기관은 사업비 집행내역을 외부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 정산보고서 및 사업비 전용통장의 이체 내역과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사업비 정산을 위한 회계법인은 서울경제진흥원 경영지원팀에서 선정한 SBA 지원사업비 정산 및 평가 회계법인으로 정한다.
- 정산은 협약기관이 현물로 계상한 민간부담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를 대상으로 실시하며, 사업비를 집행한 기관에서 정산의 의무 및 책임을 진다.

- 사업담당자는 사업비 집행기관이 제출한 정산내역 중 별도의 증빙이 없거나 협약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에 관해서는 보완요청하고, 보완이 되지 않을 시 이를 불인정하여야 한다.
- 협약기관은 현물로 계상한 내역 중 인건비에 대하여서는 개별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과 이체내역으로 증빙하여 정산한다.
- 협약기관은 현물로 계상한 내역 중 무형적 자산에 대하여서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정산을 갈음하고, 사업담당자는 별도의 증빙이 없거나 협약의 내용과 무관한 사용내역에 관해서는 불인정하여야 한다.
- 협약기관은 사업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집행 이전에 서울경제진흥원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사전승인이 없는 경우 사업담당자는 이를 불인정하여야 한다.
- 사업담당자는 정산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집행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.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는 비영리기관, 해외기관 또는 개별 협약의 특수성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.
- 협약기관은 활동비 및 추진비를 사용하는 경우 민간협력사업의 수행 연관성을 소명하여야 하며, 사업담당자는 소명되지 않는 활동비 및 추진비는 불인정하여야 한다.
- 사업담당자는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를 중간 정산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담당자는 중간 정산의 시기를 사전에 협약서에 명시하거나 협약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.
- SBA는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, 기준이나 협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추가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협약기관은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